

#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목 차>

## 1.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요건 증 전담인력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성 자	이름	임준영
	담당부서 (과)	상표심사정책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성관		연락처	042-481-8312
	과장	정인식		이메일	20140028@mail.go.kr

정책 책임자 직 위      성 명 (서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요건 증 전담인력 요건		
	2.규제조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의 나목, 다목.		
	3.위임법령	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시행령 제10조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일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조사 업무는 출원된 상표의 등록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 과정 중 유사상표의 등록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로써,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업무 수행하며</li> <li>○ '05년부터 상표조사의 품질 제도와 전문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li> <li>○ 국회 등 외부기관은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제 도입과 전문기관 지정방식의 전환(지정제→등록제)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 지정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 추진, 완료</li> <li>* 상표법 개정('19.7.9, 시행), 동법 시행령('19.6.11), 동법 시행규칙('19.6.14) 개정 완료</li> </ul> </li> <li>○ 이에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편 필요</li> </ul>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 제4조 제2호의 나. 다.</li> <li>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li> <li>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li> <li>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li> </ul>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집단) 상표조사 전문기관</li> <li>○ (이해관계자) 상표 출원인, 변리사 등</li> </ul>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공무원의 업무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하여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조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li> <li>○ 따라서, 상표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담 인력(5명) 반드시 필요*</li> <li>* 사업수행방식이 동일한 특허등록 전문기관의 경우에도 기술분야 별로 5명의 전담인력이 수행중</li> </ul>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b>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u></p> <p>가. (생략)</p> <p>나. 조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u>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u></p>	<p><b>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b>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생략)</p> <p>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u></p> <p>가. (생략)</p> <p>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u>이상일 것</u></p> <p>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u>이상일 것</u></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상표조사 업무**는 특허정보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03) 이후, **민간 전문기관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05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

【전문 조사기관 지정 및 등록 현황('19.8월)】

연도	전문조사기관		
	상표(4개)	디자인(4개)	특허등록(10개)
1996			• 특허정보진흥센터
2003	• 특허정보진흥센터		
2005	• 윗스		• 윗스
2008		• 특허정보진흥센터, 윗스	• 아이피솔루션
2015	• 나라아이넷, 케이티지	• 나라아이넷, 케이티지	

- 국회에서는 상표분야도 **특허와 동일하게 등록제로 전환**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 따라서, **등록제 전환**을 위한 상표법 개정에 따른 시행과('19.7.9) 관련된 하위 법령인 **상표법 시행령('19.6.11)·시행규칙('19.6.14)개정\*** 이 완료

\* 주요내용 : 전문기관 등록제도 관련규정 정비 등

-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미비규정 정비** 등을 위해 전면 개정 추진

### <정부개입 필요성>

-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짧은 처리기간 내에 상표권 부여 여부를 판단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상표심사가 늦어질수록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출원인이 입는 손해가 커짐

- 처리기간 단축과 동시에 고품질의 심사처리를 위해서는 **상표조사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수적
- 등록제 시행후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등록기관 난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심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거래관계에서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전문기관 인력요건 현행 유지
	내용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특허청이 사업수행기관을 직접선택하는 지정제하에서는 품질 등의 엄격한 지정요건 심사가 가능함. - 그러나, 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하에서는 품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 강화
	내용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5명 이상의 조사원, 상표분류 부여사업의 경우 5명 이상의 분류원 요구 -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17)시에도 같은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등록기관이 급증(3~11개)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 상표는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특허와 같이 DB 보유, PCT 최소문헌 등 필수설비 규정이 없어 관련 특허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특허 등록제 시행시 보다 자유로운 전문기관 등록 신청이 예상

규제대안2	대안명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 일부 완화
	내용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3명 이상의 조사원, 상표분류 부여사업의 경우 3명 이상의 분류원 요구 - 진입장벽이 낮아져 보다 자유로운 전문기관 등록 신청이 예상되나, 품질관리 등이 어려워져 상표 심사행정의 전문성 저하 야기 우려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9. 7. 24.(수)~ 8. 5.(월) 까지 청내외 의견수렴을 실시
- '19. 8. 27.(화) 고시개정관련 간담회 실시(대전)
- '19. 8. 28.(수) 고시개정관련 간담회 실시(서울)
  - 동 조항 관련 의견 제출한 이해관계자 없음
  - \* 의견문의 및 간담회 참석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주)웍스, (주)나라아이넷, (주)케이티지, 아이티케이원, 토탈리프 등 지식재산 유관기관

## 3. 규제목표

- 상표 조사·분석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심사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을 안정화하여 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상표심사행정의 공공성·전문성 제고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조사원·분류원 5명은 상표행정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등록 전문기관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규정
- 특허청 상표심사의 경우, 지정상품·식별력·상표유사 등과 관련하여 **쟁점 사항 발생시 심사관 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전문기관도 집단지성을 이용한 쟁점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5인의

인원 필요하고, **미비할 경우** 판단에 다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원·분류원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여 조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상표행정의 공공성·전문성·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중기영향평가

- 동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 예정 상표조사 전문기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중소기업에 특히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 할 수 없으므로 중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 대상인 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 예정 기관은 먼저 등록제를 실시한 특허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부분 2-30명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이고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의 수는 산업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여 통계청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업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④ 대상 업종	상표조사 서비스업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서비스제공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경험자를 보유한 기업으로 최소 7개* 이상의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li> <li>* '17년 특허선행기술조사 등록제 시행이후 신규 등록기관 중 현재 상표조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 수</li> </ul> <p>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80백만원</li> <li>- 산출내역 : 임금(45백만원)x추가투입인원(4인)</li> </ul> <p>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시행 중인 특허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신규 등록된 전문기관 간 기업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표분야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대상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비용 발생할 것이라 전망</li> </ul> <p>④ 차등화 대상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하게 등록제를 기시행 중인 특허 조사기관의 경우를 볼 때 신규 참여 예상 기관이 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등화 실익이 없음</li> </ul>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동 고시는 상표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상표 심사 지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등록, 관리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인력 요건에 대한 일몰 설정은 곤란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동 고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운영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 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같은 규정을 운영 중

<p><b>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b>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p> <p>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p> <p>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p> <p>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p> <p>(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p> <p>(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p>
--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표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고, 특히 선행기술전문기관 등록제 시행시에도 같은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등록기관이 급증(3→11개)한 선례를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준수 가능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에서 등록요건 충족여부 및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므로, 추가적인 집행자원 없이 집행이 가능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의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지원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집행이 가능함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고시 제정안 작성 및 법률 전문가 검토(~'19.7., 특허청)
- 청내외 의견수렴 실시('19. 7. 24.(수) ~ 8. 5.(월))

#### 2. 향후 평가계획

- 고시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환류 시행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시행

#### 3. 종합결론

- 동 규정을 통해 상표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운영 가능하도록하여 상표심사행정의 전문성·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상표권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18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상표조사 전문기관
활동제목	전담인력 확보
비용항목	인건비
비용	연180,000,000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인건비 : 연봉(45백만원) X 추가 투입인력(4인)
근거설명	○ 연봉 : 신규채용 조사원 1인 평균 연봉 적용
	○ 추가 투입인력 : 대안1 선택 시 기존 1인 이외에 4인 추가 확보 필요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상표출원인 및 수요자
활동제목	신속·고품질의 심사처리를 통한 상표권 확보
편익항목	신속·고품질의 심사처리를 통한 상표권 확보로 권리 안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 고품질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심사처리를 하여 출원인에게 적시성 있는 심사결과를 제공 - 상표권은 제품출시 또는 사업추진의 최종단계에 요청하는 것으로 빠른 상표 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원하는 사업을 지연 없이 추진하여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 수요자에게는 정확한 상표정보를 제공하여 상거래상 오인·혼동없이 제품 구매 가능
	○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169p(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생산증가율효과	총생산액효과	고용창출효과
2014	0.01%	174,416	1,125
2015	0.01%	402,431	2,596
2016	0.02%	599,170	3,865
2017	0.02%	791,544	5,106